

창원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단1004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김현승, 김민순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피 고 1. C

2. 유한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이정미, 정유

경, 윤수민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2.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 주식회사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8. 1. 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들의 피고 유한회사 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들과 피고 유한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2017.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과 피고 유한회사 D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연 12%,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8.부터 2018. 1. 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유한회사 D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돈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유한회사 D은 원고 B 주식회사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8. 1. 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 돈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7. 2. 3.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는 2017. 12. 7. 피고 C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 7., 이자 연 12%(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C은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E호, F호, G호, 이하 이 사건 E호, F호, G호라 각 칭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 피고 C은 2018. 10. 25. (주)H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었다)를 2019. 9. 23.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에 매도하고, 2019. 11. 1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라. 피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상가를 공동담보로 하여 (주)에 채권최고액 1,9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2,000만 원에 대하여 2017. 5. 4.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 C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는 주장,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9.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계속해서 원고 B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8.부터 변제기인 2018. 1. 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상가를 피고 D에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피고 D이 피고 C에게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도 의심스럽다. 피고 C의 이 사건 각 상가 매도행위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그 후 제3자인 I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D을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채무자가 그 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참조). 위탁자가 위와 같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등 참조).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이 사건 각 상가가 포함된 창원시 의창구 J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및 운동시설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각 개별 구분건물에 관하여 2015. 1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각종 금전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기입되자, 피고 C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 구체적으로 피고 C은 2018. 10. 25. (주)H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지하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E호, Q호, R호, S호(나중에 Q호 내지 S호는 이 사건 상가 E호로 합병되었다), F호, T호, U호(나중에 T호, U호는 이 사건 상가 F호로 합병되었다),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여기까지 1군의 부동산)와 G호, AD호(나중에 AD호는 이 사건 상가 G호로 합병되었다), AE호(뒤의 2군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앞의 1군의 부동산에 관해서 AF조합가 1순위(수익권 증서금액 3,120,000,000원), (주)AG이 2순위(수익권 증서금액 1,300,000,000원)의 우선수익자, 채무자가 (주)AH, 뒤의 2군의 부동산에 관해서 AI조합가 1순위(수익권 증서금액 702,000,000원), (주)AG이 2순위(수익권 증서금액 1,300,000,000원)의 우선수익자, 채무자가 (주)AH로 되어 있다.

(라) 피고 C이 H에 신탁한 위 각 상가건물들을 담보로 2018. 10. 25. 채무자를 각 (주)AH로 하여 AI조합에서 389,341,431원, AF조합에서 2,400,000,000원, AI조합에서 540,000,000원, AK조합에서 4,400,000,000원의 각 대출이 실행되었다. 위 각 대출금으로 피고 C은 기존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였다.

(마) 이와 같이 신탁에 제공된 상가건물 중에서 이 사건 상가 G호 및 상가 E호, F호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자 AI조합, AF조합의 동의를 받아 신탁을 해지하고, 2019. 11. 14.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2019.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 피고 D이 다시 같은 날 I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이 피고 C의 적극 재산 및 소극재산으로 거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적극재산	가액(원)	순번	소극재산	가액(원)
1	J에 있는 K호	493,714,737	1	원고들에 대한 채무	60,000,000
2	AL호	372,805,076	2	국세	513,538,490
3	AM호	379,187,147	3	지방세	357,474,930
4	AN호	359,547,607	4	주식회사 AG (AL~AO호)	500,000,000
5	AP호	359,547,607	5	AQ조합 (K, AL호)	650,000,000
6	AR호	384,439,893	6	AS조합 (AM호)	403,000,000
7	AT호	594,511,537	7	AU은행 (AN호)	420,000,000
8	AV호	590,511,809	8	AW조합 (AP호)	312,000,000
9	AX호	703,692,253	9	AU은행 (AR호)	420,000,000
10	AY호	601,853,921	10	AW조합 (AT호)	455,000,000
11	E호	3,982,000,000	11	AZ조합 (AV~AY호)	1,260,000,000
12	F호		12	AU은행 (BA~AO호)	420,000,000
13	G호		13	AZ조합 (BB 토지)	720,000,000
14	BA호	318,000,000	14	BC (BB 토지)	252,000,000
15	BD호	320,000,000	15	AF조합	2,400,000,000
16	AO호	197,000,000	16	AK조합	4,400,000,000
17	BB 토지	1,016,502,438	17	AJ조합	389,341,431
-	-	-	18	AI조합	540,000,000
	적극재산 합계	10,673,314,025		소극재산 합계	13,932,354,851

그런데 피고 C의 적극재산 목록에 H에 신탁한 나머지 이 사건 상거건물들이 빠져있으면서, H에 신탁한 상가건물을 담보로 한 AF조합, AK조합, AJ조합, AI조합(소극재산 목록 15 내지 18)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신탁재산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한 AF조합, AK조합, AJ조합, AI조합의 대출금 채무자는 피고 C이 아니고 (주)AH이다.

또 그 대출금 채무들이 일부 변제되어 2022. 4. 25.을 기준으로 각 대출잔액이 AF조합의 경우 1,415,787,021원, AK조합의 경우 2,595,809,599원, AI조합의 경우 318,552,080원이었다.

(사)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매수한 피고 D은 피고 C에게 2019. 10. 26.부터 28.까지 사이에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11. 14. I로부터 대출을 받아 1,649,82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시 같은 달 15.까지 37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이 일부 금액을 피고 D 대표 BE에게 다시 입금한 것이 있으나 바로 피고 D이 같은 금액을 피고 C에게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앞에서 본 증거, 갑 8호증의 1 내지 14, 을 1호증의 1 내지 23,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 C이 H에 신탁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피고 C에게 소유권등기가 회복되진 않은 대다수의 이 사건 상가건물 개별 호수에 대하여 위탁자 피고 C이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역시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이를 피고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피고 C의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평가금액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원고들은 피고 C이 채무자로 되어 있지도 않은 신탁재산 우선수익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을 피고 C의 소극재산으로 들고 있는데, 그 대출금액 중 일부는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을 제외하면, 원고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더라도 매도행위 당시 피고 C의 적극재산 가치는 10,673,314,025원인데 반하여, 피고 C의 소극재산은 6,203,013,420원(13,932,354,851원 - 2,400,000,000원 - 4,400,000,000원 - 389,341,431원 - 540,000,000원)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각 상가를 피고 D에 매도할 당시 피고 C이 채무 초과에 있었다거나 위 매도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

[별 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J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B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4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및 운동시설

지1층 4496.89㎡

1층 2613.13㎡

2층 2892.06㎡

3층 2935.38㎡

4층 2278.7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J 대 549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56.46㎡

42.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493.8분의 96.36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J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B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4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및 운동시설

지1층 4496.89㎡

1층 2613.13㎡

2층 2892.06㎡

3층 2935.38㎡

4층 2278.7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J 대 549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29.0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493.8분의 73.97

3.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J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B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4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및 운동시설

지1층 4496.89㎡

1층 2613.13㎡

2층 2892.06㎡

3층 2935.38㎡

4층 2278.7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J 대 549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91.6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493.8분의 57.97

(이상).

